



4단계 BK21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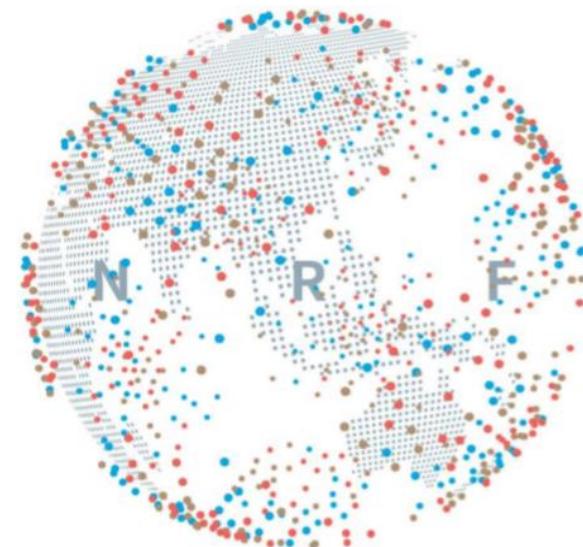
사업관리 운영 규정(교육연구단(팀))

2022.1.



목 차

- 01 규정 체계
- 02 규정 주요 변경 사항
- 03 FAQ



4단계 BK21 사업은 2021.1.1. 부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준수하여야 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2021.1.1.시행)

- ✓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체제를 혁신하고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연구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가혁신역량을 제고하고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하여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제14조 및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한다.
* 예고 및 공모 등, 과제선정, 협약, 과제수행 및 관리 / 평가, 과제 변경 및 중단
- ✓ **제13조(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용 등)** 연구개발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고시하는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계상 · 사용하여야 한다.

* (참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 [별표2]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40조제4항), (제49조)

: 대학의 장은 학생연구자의 총 인건비 계상률을 산정하는데 장학금을 포함하여서는 아니된다.

4단계 BK21 사업은 「학술진흥법」과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을 법령상 근거로 추진

◎ 학술진흥법

- ✓ 제7조(학문후속세대의 육성) 교육부장관은 대학생, 대학원생, 관련 기술 및 지식을 가진 사람 또는 산업체 근무자 등이 연구자의 학술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우수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 ✓ 제11조(학문후속세대의 육성) 정부는 창의적인 연구개발과 이공계인력의 육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구활동에 중점을 두는 대학(이하 “연구중심대학”이라 한다)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교육부의 「훈령」에서 사업관리 운영에 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고
 한국연구재단의 「운영지침 및 집행기준」에서 세부 훈령 상 위임한 사항들을 규정함

◎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관리운영에 관한 훈령

- ✓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중략)…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7조(전문기관)** ⑤전문기관의 장은 …(중략)… 훈령 및 지침의 범위에서 지침 및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참고) 4단계 BK21 사업 훈령은 2021년 1월 제정된 「대학 재정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통합 훈령)」에 따라 폐지되었으나,
 사업 종료 시(‘27년)까지는 효력 유지(통합 훈령 부칙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4단계 BK21 사업 훈령은 제정 당시 추진 사업으로 분류)

◎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관리 운영 지침,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2021.6.11.개정)

- ✓ **운영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중략)… 훈령의 위임을 받아 …(중략)… 사업 목표 달성과 효율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 ✓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중략)… 지침의 위임을 받아 …(중략)…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업무를 처리할 때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규정 주요 변경 사항

⑤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관리 운영 지침,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2021.6.11.개정)

- (개정배경) 대내외 환경변화(코로나19 등) 반영 및 사업운영 개선 필요
- (주요내용) 온라인 국제학술회의 참가 시 지원가능 인원 수 기준완화 등 총 7건

〈개정사항 총괄표〉

연번	관련 규정	주요 내용
1	(운영지침) 제34조 제4항, (집행기준) 제18조 제3항 제4호	<u>국제학술회의 온라인 참석 시 사업비 지원가능 인원 수 기준 완화</u>
2	(운영지침) 제48조 제4항, (집행기준) 제29조 제5항 제1호	<u>대학원혁신 지원비</u> 를 활용한 외국인 대학원생들의 교육·연구 역량 증진 목적의 언어 능력 향상 교육 지원기준 확대
3	(운영지침)【별표 6】4단계 BK21 사업 참여인력 서약서 양식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공동관리 사전 예방을 위한 <u>참여대학원생 서약서 양식 수정</u>
4	(운영지침) 제9조 제3항, 제14조 제1항 및 제14조의2	상위 규정(교육부 훈령)과의 <u>문구 일치화</u>
5	(운영지침) 제14조 제2항 제3호 및 제14조의2 제2항	신진연구인력 및 산학협력전담인력 채용 관련 <u>문구 명확화</u> 로 해석 상 혼란 해소
6	(운영지침) 제16조 제2항 및 제4항	사업 상위법 변경(학술진흥법→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u>문구 수정</u>
7	(운영지침)제14조 제3항 제3호	계약교수(신진연구인력)의 월 인건비 지급 재원 <u>문구 명확화</u>

규정 주요 변경 사항

1 국제화경비 지원 기준 완화

BK21 사업 규정 개정(안)

☞ (운영지침) 제34조(국제화경비) 제4항,
(집행기준) 제18조(국제화경비) 제3항 제4호

〈BK21 사업 규정 신·구 조문 대비표〉

구분	현행	개정(안)
운영 지침	<p>④ 제1, 2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 학술회의 참가 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원생의 경우 발표별 논문 저자 중 3인 이내 또는 지정토론자 (2., 3. 중략) 4. 단순참가의 경우에는 참여대학원생 및 신진연구인력(산학협력전담인력 포함) 총 3인 이내 가능.</p>	<p>④ 제1, 2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학술회의 참가 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여비를 수반하지 않는 온라인 국제학술회의 참가 시에는 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인원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하 제1호~제4호 좌동)</p>
집행 기준	<p>4. 국제(학술)대회 당 발표 논문별 저자 중 각 3인 이내의 참여대학원생, 신진연구인력, 산학협력전담인력에 대하여 지원이 가능하며, 참여교수는 지도하고 있는 참여대학원생이 발표논문의 저자로서 국제학술대회에 참여하는 경우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논문발표가 아닌 단순 참가의 경우에는 총 3인 이내의 참여대학원생 및 신진연구인력(산학협력전담인력 포함)에 한해서만 지원할 수 있다.</p>	<p>4. 국제(학술)대회 당 발표 논문별 저자 중 각 3인 이내의 참여대학원생, 신진연구인력, 산학협력전담인력에 대하여 지원이 가능(단, 여비를 수반하지 않는 온라인 국제학술회의 참가 시에는 인원수 제한 미적용)하며, …(중략)… 논문발표가 아닌 단순 참가의 경우에는 총 3인 이내(단, 여비를 수반하지 않는 온라인 국제학술회의 참가 시에는 인원수 제한 미적용)의 참여대학원생 및 신진연구인력(산학협력전담인력 포함)에 한해서만 지원할 수 있다.</p>

✓ **(개정사유)** 전 세계적 팬데믹(코로나19)에 따라 대면 학술대회 개최의 어려움으로 학술대회 패러다임 변화가 발생함. 이에 따라 참여대학원생의 연구력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하여 비대면 국제학술회의 참석 인원 수 기준 완화를 통한 학문분야 동향 파악 및 발표기회 확대 제공

✓ 국제(학술)대회 예산 집행 기준

- **(과학기술분야)** 4개국 이상 참여, 구두 발표 **20편** 이상, 구두 발표 논문 발표자 중 외국기관 소속 외국인 50% 이상
(단, 국내 개최 시 1/3이상)

- **(인문사회분야)** 4개국 이상 참여, 구두 발표 **10편** 이상, 구두 발표 논문 발표자 중 외국기관 소속 외국인 50% 이상
(단, 국내 개최 시 1/3이상)

- **(국제전시회)** 4개국 이상 참여, 출품작 10편 이상, 출품자 중 외국기관 소속 외국인 50% 이상(단, 국내 개최 시 1/3이상)

★ 단, 상기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도 영리목적의 학문적 권위가 인정되기 어려운 부실학회/학술지가 개최하는 국제학술대회는 사업비 집행 불가

2 대학원혁신 사업비 지원 기준 확대

BK21 사업 규정 개정(안)

☞ (운영지침) 제48조(교육·연구프로그램개발·운영비) 제4항,
(집행기준) 제29조(교육·연구프로그램개발·운영비) 제5항 제1호

〈BK21 사업 규정 신·구 조문 대비표〉

구분	현행	개정(안)
운영 지침	④ 학문후속세대 및 신임교원의 교육·연구 역량 증진을 위한 대학원생 논문작성법, 외국어 능력 향상 교육, 그 외 학업 지원 등에 지출할 수 있다.	④ 학문후속세대 및 신임교원의 교육·연구 역량 증진을 위한 대학원생 논문작성법, 언어 능력 향상 교육, 그 외 학업 지원 등에 지출할 수 있다.
집행 기준	⑤ 학문후속세대(대학원생 및 신진연구인력) 및 신임교원(임용 후 3년 이내 교원)의 교육·연구역량 증진을 위한 비용으로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집행할 수 있다. 단, 미참여 학과 직접 지원은 불가하다. 1. 대학원생 논문작성법, 외국어 능력 향상 교육, 그 외 학업 지원 등 프로그램 구축 운영비 (2.~4. 중략)	⑤ 학문후속세대(대학원생 및 신진연구인력) 및 신임교원(임용 후 3년 이내 교원)의 교육·연구역량 증진을 위한 비용으로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집행할 수 있다. 단, 미참여 학과 직접 지원은 불가하다. 1. 대학원생 논문작성법, 언어 능력 향상 교육 , 그 외 학업 지원 등 프로그램 구축 운영비 (2.~4. 중략)

✓ (개정사유) 내국인 학생들의 외국어 능력 향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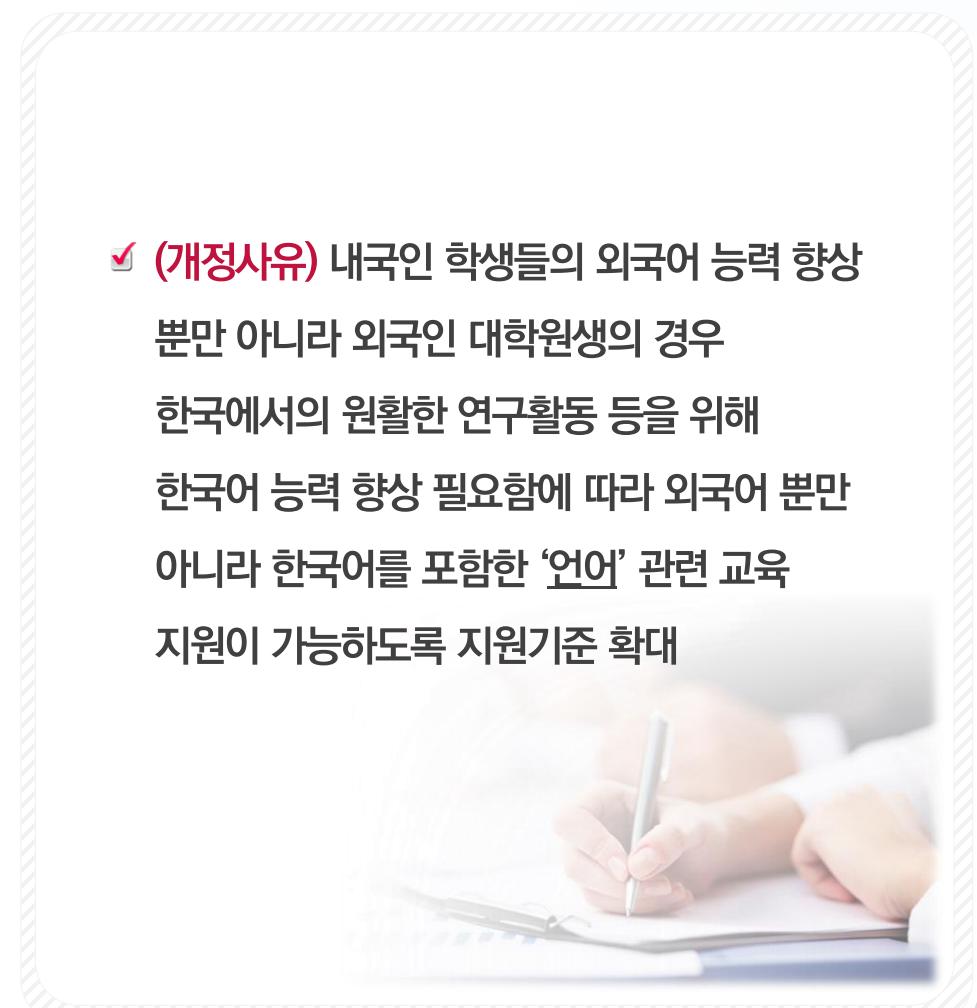
뿐만 아니라 외국인 대학원생의 경우

한국에서의 원활한 연구활동 등을 위해

한국어 능력 향상 필요함에 따라 외국어 뿐만

아니라 한국어를 포함한 ‘언어’ 관련 교육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기준 확대



규정 주요 변경 사항

3 참여인력 서약서 양식 수정

BK21 사업 규정 개정(안)

☞ (운영지침) [별표 6] 4단계 BK21 사업 참여인력 서약서 양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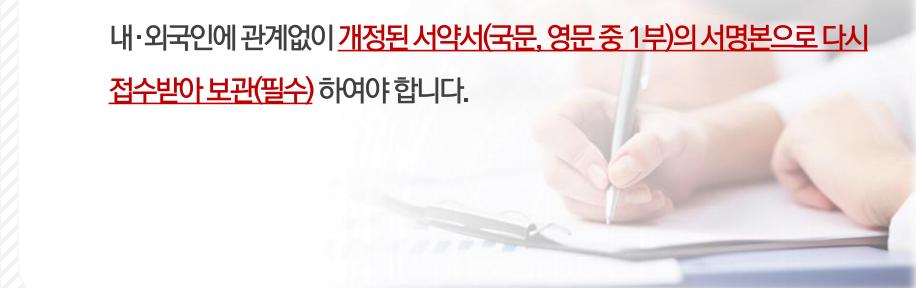
〈BK21 사업 규정 신·구 조문 대비표〉

구분	현행	개정(안)
운영 지침	<p>3.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및 인건비와 관련한 아래의 유의사항을 항상 준수하며, 연구장학금 공동관리 예방 및 사업비의 목적 외 집행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p> <p>✓ 각 개인의 통장 · 도장 일괄 관리 및 일정 금액을 회수하여 공동 관리하는 행위는 엄격히 제한</p> <p>✓ 연구장학금 공동관리 등 부당한 지시 · 요구 확인 시 관련 기관에 즉시 알림</p>	<p>3.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및 인건비와 관련한 아래의 유의사항을 항상 준수하며, 연구장학금 공동관리 예방 및 사업비의 목적 외 집행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p> <p>✓(좌동) ✓(좌동) ✓(신설) 참여대학원생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국민권익위 신고 등 연구장학금 공동관리 의혹이 발생하였을 때, 연구장학금 수령 통장 사본 열람 등 감사원, 교육부, 재단 또는 대학 등 관련 기관 점검에 성실히 협력하여야 함</p>

- ✓ (개정사유) BK21 사업 참여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연구장학금 공동관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동관리 의혹 발생에 따른 점검 시 계좌정보 열람에 관한 동의 문구 추가 필요



참여인력 서약서는 **사업 최초 참여 시 1회 작성**하고, 보관하시면 됩니다.
다만, 지침 개정('21.6.11)에 따라 **'21.6.11.자(포함) 이후 참여한 모든 참여인력**에 대해서는 기존에 이미 서약서를 접수하였다고 하더라도, 내·외국인에 관계없이 **개정된 서약서(국문, 영문 중 1부)의 서명본으로 다시 접수받아 보관(필수)**하여야 합니다.



규정 주요 변경 사항

4 BK21 사업 규정 문구 수정

사업 상위 규정(교육부 훈령)과의 문구 일치화

- ☞ (운영지침) ①제9조(참여교수의 자격 및 소속) 제3항,
② 제14조(신진연구인력) 제1항 및 제14조의2(산학협력 전담인력)

〈BK21 사업 규정 신·구 조문 대비표〉

구분	현행	개정(안)
운영 지침 (①)	③ 참여교수가 1년 이내의 국내 외 기관 파견중이거나, 연구년 또는 장기 해외출장(6개월 이상) 등으로 국내에 없을 때에는 교육연구단의 장 및 대학의 장이 해당 기간 동안 학생을 지도…	③ 참여교수가 1년 이내의 국내 외 기관 파견중이거나, 연구년 또는 장기 해외출장(6개월 이상) 등으로 국내에 없을 때에는 교육연구단의 장 또는 대학의 장 이 해당 기간 동안 학생을 지도…
운영 지침 (②)	대학의 장 및 교육연구단의 장은 …채용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준용한다.	대학의 장 은 …채용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준용한다.

- ✓ (개정사유) 훈령과 지침의 표기가 상이하여 규정 해석 상 혼란 발생

사업 상위 규정(국가연구개발혁신법) 변경에 따른 문구 수정

- ☞ (운영지침) 제16조(수시점검) 제2항 및 제4항

〈BK21 사업 규정 신·구 조문 대비표〉

구분	현행	개정(안)
운영 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② 전문기관의 장은 수시점검 결과 …관련자에 대하여 학술 진흥법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참여제한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③ 중략) ④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학술진흥법 제19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제20조의2에 따라 참여 인력 또는 대학 등에 대하여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② 전문기관의 장은 수시점검 결과 …관련자에 대하여 국가연구 개발혁신법 제32조에 따른 참여 제한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③ 중략) ④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제32조에 따라 참여인력 또는 대학 등에 대하여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다.

- ✓ (개정사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에 따라 지침 상 명시된 상위 규정 수정 필요

5 신진연구인력 및 산학협력 전담인력 관련 문구 명확화

채용 관련 문구 명확화

- (운영지침) 제14조(신진연구인력) 제2항 제3호, 제14조의2(산학협력전담인력) 제2항

〈BK21 사업 규정 신·구 조문 대비표〉

구분	현행	개정(안)
운영 지침	(중략)…자교 박사학위 취득자는 3분의 2 이내로 한다. 다만 지원 인원이 3명 미만이거나 …전공 분야와 다른 경우에는 자교 박사 학위 취득자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중략)…자교 박사학위 취득자는 3분의 2 이내로 한다. 다만 채용 인원 이 3명 미만이거나 …전공 분야와 다른 경우에는 자교 박사 학위 취득자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 (개정사유) 신진연구인력, 산학협력 전담인력 채용 및 지원 관련 지침 상 ‘지원 인원’을 ‘applicant’로 오해석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여 ‘채용 인원’으로의 변경을 통해 해석 명확화

계약교수(신진연구인력)의 월 인건비 지급 재원 문구 명확화

- (운영지침) 제14조(신진연구인력) 제3항 제3호

〈BK21 사업 규정 신·구 조문 대비표〉

구분	현행	개정(안)
운영 지침	③ 계약교수의 채용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2. 중략) 3. 대학의 장은 계약교수에게 월 300 만원 이상을 인건비로 지원하여야 한다.	③ 계약교수의 채용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2. 중략) 3. 대학의 장은 계약교수에게 사업비에서 월 300만원 이상 을 인건비로 지원하여야 한다.

- (개정사유) 계약교수 월 인건비 관련하여 ‘사업비에서’라는 문구를 추가하여, 재원 출처 명확화 및 계약교수 인건비 지급액 최소 기준 강조

◎ 자체 운영규정 및 연구윤리



자체 운영규정



연구윤리 확립

✓ 교육연구단(팀)장 외 직급을 만들어서 운영해도 되나요?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 ❖ BK21 사업에서는 교육연구단(팀)장 외 직급에 대한 별도 규정 및 자료제출 등 절차는 없으며, “교육연구단(팀) 자체 운영규정”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 관리·운영 지침 제5조 연구윤리 확립 관련하여 연구윤리과목 개설 항목은 학과(대학원) 내 교육과정으로 개설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요?

- ❖ (과목개설) 연구윤리과목은 대학 본부 차원에서 개설하시면 됩니다. 교과/비교과 과정 및 온/오프라인 강의 형태로 모두 개설 가능하며, KIRD 및 외부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강의와 1회성 특강 형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미 개설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신규로 개설하지 않고 기존 개설된 강의를 수강하셔도 됩니다.
 ‘21년도까지 미개설한 대학에서는 ‘22년 1학기까지 연구윤리과목 개설을 완료하시기 바라며, 개설 및 이수 여부 등은 지침 제5조 2항에 따라 향후 평가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 ❖ (이수사항) PASS/FAIL 형태의 과목도 인정 가능하며, BK21 사업 참여대학원생들은 참여기간 내 최소 1회는 이수를 하셔야 합니다. 관련하여, 이수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수증, 성적증명서 등)을 보관 증빙으로 구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BK21 사업 참여 이전 대학원 과정 내 연구윤리 과목을 이수하여 증빙 가능 시 이수한 것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 연구윤리과목 개설 전 참여대학원생의 출업 또는 수료생 신분으로 해당 과목을 수강할 수 없는 경우,
 사유 등을 기재한 교육연구단(팀)장의 확인서(자유양식)를 구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이수 여부는 향후 평가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④ 실적 인정기준



✓ 중간평가 시 참여인력별 실적 인정기준 및 산정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실적 인정기준 및 산정기간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22년 하반기 의견수렴 등을 통해 수립하여 평가가 시행되는 시점에 세부방법 및 기준 등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다만, 아래의 기준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기준1) 연구성과(실적) 인정기준〉

성과 구분	인정 기준
논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교수 : 소속 대학명 기재 시 인정 ※ 동일 대학 내 타 학과명으로 소속이 표기된 경우도 대학명 확인 가능하면 인정 - 참여대학원생 및 신진연구인력 : BK21 사업 참여 학과(부)명(융합전공일 경우 융합전공명) 또는 교육연구단(팀)명 기재 시 인정 ※ 단, 저널의 특수성으로 학과(부) 표시가 되어있지 않은 논문인 경우, 참여 대학명으로 명기된 경우에는 인정 - 전체 참여인력 : 타 기관 병기도 인정(예, ○○대학교 ○○과, ○○기술연구소) ★ 오프라인(인쇄물)으로 출판된 학술지 논문만 인정되며, 온라인으로만 게재되는 논문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인정
특허	- 기관 명의(학교, 산단, 산업체 등) 대학명 기재 시 인정(참여교수명 기재)
연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본부 연구비 중앙관리부서나 산학협력단으로 입금된(입금기준) 실적 인정 ※ 타 기관과 공동과제의 경우, 지분 확인 서 등을 통하여 증빙될 수 있을 경우 산정 가능

※ 해당 성과 인정 기준은 2020년도 선정평가 기준이며, 세부기준은 향후 일부 변동될 수 있음

〈(기준2) 참여인력별 실적(인정)기간 예시〉

종간평가기준	총 실적 산정기간		
참여대학원생	미참여	참여	미참여
			전체 실적 인정
참여교수	미참여	참여	미참여
			참여기간 동안의 실적만 인정
신진연구인력	미참여	참여	미참여
			참여시점부터 산정기간까지의 실적 인정

※ 실적 인정 세부기준은 향후 일부 변동될 수 있음

◎ 참여인력-신진연구인력



- 기존 박사후연구원으로 근무하였던 박사님을 계약교수로 직위 변경하고자 합니다.
직위 변경 시 박사후연구원으로 근무하였던 기간이 포함되나요?**

❖ 신진연구인력은 박사후과정생과 계약교수를 포함하고 있으며, 직위와 상관없이 최대 4년까지 계약기간을 갱신 또는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신진연구인력 인건비 하한선(월 300만원)이 정해져 있는데, BK21 사업비로 하한선보다 낮게 지급하고, 나머지 인건비 부족분을 교비로 지원해도 되는지요?**

❖ BK21 사업비에서 월 하한액(300만원) 이상 지급되어야 하며, 하한액을 초과하는 인건비만 교비에서 지원 가능합니다. 다만, 타 과제와 고용계약 체결로 소속 대학 외 이중소속이 될 경우에는 참여가 불가합니다.
 ★ **신진연구인력 인건비(월 300만원)**은 퇴직금 및 4대보험 범정부담금 중 개인부담금을 포함한 금액이며, 근로계약서 상 해당 금액(300만원)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때문에 월 급여액은 276.9만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전문연구요원인 신진연구인력도 BK21 사업에 참여할 수 있나요?**

❖ 전문연구요원 임용 시 전문연구요원 지정업체인 대학 내 연구소 소속으로, 소속 연구소와 교육연구단(팀) 간의 공동연구 또는 기술개발계약 체결 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참여인력-참여대학원생(1)



시스템 등록

✓ 신규 참여대학원생의 BK21 사업 종합정보관리시스템 등록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国家연구자번호 발급 서비스 통합에 따라 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IRIS) 홈페이지에 가입하여 국가연구자번호를 부여받아 한국연구자정보(KRI)에 가입 후 BK21 사업 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 참여대학원생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 단, 코로나19로 인하여 국내 미입국한 외국인 대학생 중 국가연구자번호 발급이 불가한 경우 시스템의 자동입력 사항을 직접 입력하여 등록하면, 연구자등록번호 임의값(예 : 9000001, 등 9로 시작되는 번호 부여)이 부여됩니다.
- (관련 : BK21사업팀-12009, '21.12.1.)

코로나19
미입국

✓ 코로나19로 인한 국내 미입국 참여대학원생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나요?

- 코로나19로 입국이 어려운 대학원생에 한해(개인사유 등은 해당 없음) 정상적으로 학기 등록을 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입국이 어려운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과 교육과 연구활동에 지장이 없음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는 교육연구단(팀)장 확인서를 구비하시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단, 추후 국내로 입국 시에는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또는 외국인 등록증 앞, 뒤 사본(D-2비자 여부 및 만료기한 확인) 등을 구비하셔야 합니다. (30일을 초과하는 해외연수 및 단순 해외 체류는 해당 기간동안 연구장학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 참여인력-참여대학원생(2)



구비 서류

✓ 장학금을 지원받는 지원대학원생을 포함하여 참여대학원생 참여 및 종료 시, 구비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 ❖ 관리·운영 지침 제11조 및 “4단계 BK21 사업 참여요건 검증 매뉴얼(공지사항 105번 게시물(‘21.2.23.))”에 따라 참여(지원)대학원생의 참여 시에는 4대보험 가입내역확인서를 구비, 종료 시(사업기간 중 참여 종료 포함)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구비하셔야 하며, 사업기간 중 참여 종료 시에는 종료 사유 등의 내용이 포함된 사유서를 함께 구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 등록증(D-2 비자 확인)으로 대체 가능하며 만료기한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D-2 비자가 아닌 다른 종류의 비자일 경우 참여 시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종료 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구비하셔야 합니다. 비자발급 지연 등의 사유로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비자 사본 등으로 전일제 여부 확인이 어렵다면 참여대학원생으로 인정이 어렵습니다.



4대보험 가입

✓ 참여대학원생이 방학 인턴쉽에 참여하게 되어 4대보험에 가입하게 되는 경우, 참여대학원생 자격이 유지될 수 있나요?

- ❖ 인턴쉽 기간동안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참여대학원생에서 제외하셔야 합니다.
참여대학원생의 경우 관리·운영 지침 제11조 3항 각 호에 따른 예외사항만 인정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주 40시간 이상 교육과 연구에 전념하여야 하며 제11조 4항을 확인하시어 예외사항 내용, 기간, 증빙자료 및 확인서 등을 구비하고 소명하셔야 합니다.

◉ 참여인력-참여대학원생(3)



연구장학금

- ✓ 지원대학원생(수료생)이 2월 졸업 후 POST-DOC 신분으로 연구실에서 연구를 계속 할 예정이며, BK21 사업비 규모가 작아서 타 과제로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연구장학금은 2월 졸업일 시점을 기준으로 종료해야 하는지요?

❖ 졸업일이 포함된 해당 월까지 사업에 참여한다는 교육연구단(팀)장 확인서 증빙 시 연구장학금을 일할 계산 하지 않고, 2월 장학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단, 해당 대학원생이 참여대학원생의 자격요건(전일제 등)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연구장학금 지급은 어려우며, 2월 이후 타 과제로 계약을 하시는 시점부터는 이중소속 금지 규정에 의하여 4단계 BK21 사업에 중복 참여는 불가능합니다.



참여대학원생

- ✓ 학석사 연계과정 등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학부생에게도 장학금 등의 지급이 가능할까요?

❖ 학석사 연계과정인 학생의 경우, 학칙 상 해당 학생이 석사과정으로 인정되는 시점부터 참여대학원생으로 선발이 가능(관련 학칙 등을 증빙으로 구비)하며 석사과정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참여대학원생으로 참여할 수 있으나 지원대학원생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기타사항



사업운영
매뉴얼

✓ 4단계 BK21 사업에서는 사업관리·운영 가이드북이 제공되나요?

- 설명회 및 실무자 워크숍, 컨설팅, QNA 자료집 발간 등으로 사업관리·운영의 이해를 도울 예정이며, 관련된 모든 자료는 4단계 BK21 사업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자료실 게시판에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자 등록

✓ BK21 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 실무자 정보를 등록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대학 및 교육연구단(팀)에서는 실무자 관리 차원에서 산학협력단 및 교육연구단(팀) 실무자 정보를 시스템에 등록 및 변경 정보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셔야 합니다. 또한, 재단에서 사업 운영·관리 등과 관련하여 실무자와 연락이 필요한 경우 활용하고자 합니다.

★ 각 대학 2022년 신규 담당자는 시스템에 변경 정보 업데이트 요망: 시스템 접속 > 교육연구단정보/성과관리 > "교육연구단실무자" 메뉴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감사합니다.

